

(주)대신경제연구소

스튜어드십 코드



대신경제연구소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제 정 2019.01.04.

주식회사 대신경제연구소(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이하 "DERI" 또는 "당 연구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기인 1984년에 설립된 증권업계 최초의 경제연구소로서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분석 및 조사·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DERI 산하 지배구조연구소에서는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이행 지원, 상장기업 주주총회 의안분석 자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하 "ESG") 평가, 상장기업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RI는 2016년 12월 16일 스투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이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DERI는 자산의 소유자나 운용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자문기관으로서 스투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며, 이의 수용과 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을 선언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1)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2) 이해상충방지 정책 공개,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4) 수탁자 책임 이행 내부지침 마련, (5) 의결권 행사 정책·내역 공개, (6)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7)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의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RI는 이 7가지 원칙 모두를 수용하며,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의 관리자·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탁자 책임 정책·지침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DERI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문기관이므로 <원칙 1>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 연구소는 기관투자자에게 아래의 주요 서비스 및 보고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명확한 정책 수립을 돕고 관련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선 DERI는 스투어드십 코드 제·개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당 연구소의 의안분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주주총회에서 객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충실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는 당 연구소의 ESG 평가 서비스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비재무적 성과를 파악하

고 이를 고려한 투자전략을 세움으로써 투자가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DERI는 상장기업 모니터링, 배당평가모형, 인물 정보 시스템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판례,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시장관행(market practice)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분석한 각종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중장기 균형 성장, 자본시장의 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DERI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및 보고서]**

**1. 서비스**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서비스: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지원, 주주관여활동 관련 내부지침 제공 등
- 의안분석 자문 서비스: 주주총회 안건 분석 보고서 제공 등
- ESG 평가 서비스: 상장기업 ESG 평가 등급 및 분석 보고서 제공  
<http://www.deri.co.kr/content/gr>
- 상장기업 모니터링 서비스: 상장기업 상시 모니터링 지원 및 분석 보고서 제공 등
- 배당평가모형 관련 서비스: 과소/과대 배당기업 선별 및 적정 배당성향의 범위 제시 등  
[http://www.deri.co.kr/content/dc#str\\_32](http://www.deri.co.kr/content/dc#str_32)
- 인물 정보 시스템 관련 서비스: 상장기업 임원에 대한 정보 분석 등  
[http://www.deri.co.kr/content/dc#str\\_31](http://www.deri.co.kr/content/dc#str_31)

**2. 보고서**

-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 [http://www.deri.co.kr/content/pr#str\\_11](http://www.deri.co.kr/content/pr#str_11)
- ESG 리뷰 보고서: [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1](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1)
- 이슈 보고서: [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2](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2)
- 판례 및 법령 제·개정 동향 보고서: [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3](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3)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 [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4](http://www.deri.co.kr/content/report#str_24)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해상충방지 정책 공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 고객·수익자 간의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DERI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내부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이해상충 상황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의 준비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기준을 정비하거나 의사 결정하는 경우 DERI와 같은 전문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도 당 연구소의 독립적인 자문을 활용하여 이해상충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DERI의 경우에도 기관투자자와는 별도의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 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이 자문기관으로서의 객관성,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DERI는 대신증권(주)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나 모회사로부터 경영 및 영업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독립 법인입니다. DERI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고 당 연구소가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이 당사의 자문을 받는 기관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ERI의 이해상충 예방조치 및 관리]**

**1. 관계사 및 관계사 임직원의 업무 관련 영향력 배제 조치**

- 관계사 및 관계사 임직원이 DERI의 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
- 관계사 및 관계사 임직원이 DERI의 의안분석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각종 기준의 제·개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

**2.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내부통제 구축**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공개: 의안분석의 기준인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공개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규 준비: 분석대상회사와의 접촉시 준수할 규정 마련, 분석대상회사와의 통화시 해당 내용 녹취, 수집 정보의 개인적 사용 금지 등
- 이해상충 체크리스트 활용: 의안분석 및 ESG 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인력은 분석 및 평가하는 기업과의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점검, 이해상충 상황 확인시 관련 임직원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
- 임직원 윤리강령 제·개정 및 교육: 이해상충 상황 방지, 알선·청탁행위 금지, 금품수수행위 제한, 업무상 비밀 유지 및 보호 등
- 준법서약서 마련 및 서명
- 임직원 자기매매거래 신고: 매월 1회 시행
- 사후 감사 실시 등

무엇보다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업무의 독립성 훼손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DERI는 분석대상회사인 상장기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문 및 컨설팅과 보고서 제공 등을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중장기적인 회사가치, 그에 따른 투자자산 가치의 보존·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대상회사 점검은 경영성과 및 주요 재무정책, 중장기 경영전략 등과 같은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 모두를 투자 활동의 중요 요소로 취급하고 이를 주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점검 활동은 선제적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끌어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DERI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관투자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전략(분할, 합병 등)과 지배구조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RI의 주기적 점검 관련 서비스]**

**1. ESG 평가 서비스**

-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비재무적 성과 분석 및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보고서의 제공
- ESG 평가등급 데이터베이스
- ESG Company Profile Report: 기업별 세부 ESG 관리활동 및 리스크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
- Quarterly Report: 분기별로 ESG 관련 제재 및 발생내역을 분석하여 ESG 등급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
- Pre-rating Report: 고객의 ESG 평가대상 외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요청시 이에 관한 임시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 Sector-rating Report: 섹터별로 평가결과를 분석한 보고서
- ESG Controversial Company Report: 기업의 ESG 관련 중요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2. 상장기업 모니터링 서비스**

-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에 특화된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DERI는 투자대상회사의 ESG 등급 평가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상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당 연구소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 기준 890개사, 2018년 기준 952

개 기업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범위의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의 ESG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기관투자자에게 ESG 평가 등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DERI는 다양한 종류의 ESG 분석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그 필요 수준에 따라 시의성 있고 객관적인 비재무적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DERI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 연구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에 특화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점검활동을 통해 기관투자자는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감지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앞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만일 문제가 인식되었을 경우 어떤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개선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적 협상(또는 대화)을 통한 기업 관여활동(engagement activity)이 어떤 기준과 방식을 통해 이행될 것인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에 따른 관여활동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과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DERI는 자문기관으로서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된 관여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기관투자자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직접적인 관여활동을 하는 경우 당 연구소의 자문업무를 이용하는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사이에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간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에 이를 기관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ERI가 제공하는 주주관여활동 관련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RI의 주주관여활동 관련 서비스]**
- 1. 의안분석 자문 서비스:** 원칙 1 참조
  - 2. ESG 평가 서비스:** 원칙 3 참조
  - 3. 상장기업 모니터링 서비스:** 원칙 3 참조

- 4. 배당평가모형 관련 서비스: 원칙 1 참조
- 5. 인물 정보 시스템 관련 서비스: 원칙 1 참조
- 6. 스투어드십 코드 서비스: 원칙 1 참조. 스투어드십 코드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활동에 관한 명확한 내부지침의 수립을 지원

<원칙 1> 및 <원칙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ERI는 의안분석 서비스, ESG 평가 서비스 및 상장기업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정보, 비재무적 성과 측정 정보 및 지배구조 관련 상시 모니터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평가모형 관련 서비스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정 배당성향의 범위를 제시하고 인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장기업 임원에 대한 정보 역시 파악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함께 관여활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서 또는 자문 등이 제공됨으로써 기관투자자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하여 서면 질의, 보충적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식적 관여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당 연구소는 스투어드십 코드 서비스 제공시 기관투자자가 관여활동에 관한 명확한 내부지침 역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에게 이러한 관여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DERI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득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 연구소는 부득이하게 이러한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즉시 내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엄중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해당 기업에 내용 공표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에 따라 관련 임직원을 감독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각 경우의 사유 역시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행사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행사의 기준이 되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가이드라인 내의 세부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정책·내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 수단으로서 의결권 행사시 기관투자자가 고려하는 찬성·중립·반대의 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이러한 행사 지침·내역 등을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전문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DERI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RI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http://www.deri.co.kr/content/pr#str\\_12](http://www.deri.co.kr/content/pr#str_12))을 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개선·보완되고 있습니다.

**[DERI의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

: [http://www.deri.co.kr/content/pr#str\\_12](http://www.deri.co.kr/content/pr#str_12)

1. 경영권과 주주권간의 견제와 균형
2. 합리적인 주주환원정책에의 기여
3.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공동이익과 동반 발전의 추구
4.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정책의 준수 및 합리적 발전 방안 제시
5. 시장참여자의 건전한 지배구조 문화 확립

DERI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입각하여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에게 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별 맞춤형 의결권 자문도 실시합니다. 다만, 당 연구소는 자문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업무를 이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탁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DERI의 의결권 행사 권고가 바로 당 연구소의 의결권 자문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표명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기 위해 당 연구소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와의 접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를 접촉 금지 기간(blackout period)으로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포럼 및 세미나와 같은 공개된 행사나 컨퍼런스 콜과 같은 비대면 접촉을 제외하고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DERI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권 권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늦어도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게시일을 변경하거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당 연구소 데이터센터에서는 주주총회 결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http://www.deri.co.kr/content/dc#str\\_33](http://www.deri.co.kr/content/dc#str_33)).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는 기관투자자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과 수익자로 하여금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의 균형 있는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한 현황을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하고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이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활동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인 면에 한정하지 않고 정성적인 면에까지 그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DERI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문기관이므로 <원칙 6>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당 연구소는 아래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 ESG 평가 보고서, 상시 모니터링 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형태로 수탁자 책임 지원 활동에 관한 기록을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및 관여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DERI는 주주활동보고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고객·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주주활동내역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한 자문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DERI의 주기적 보고 관련 서비스]**
1. 의안분석 자문 서비스: 원칙 1 참조
  2. ESG 평가 서비스: 원칙 3 참조
  3. 상장기업 모니터링 서비스: 원칙 3 참조
  4. 주주활동보고서 컨설팅 서비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보고서 작성 자문업무 등 수행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부 조직체계를 설계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책임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DERI와 같은 외부 전문 자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DERI는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기업금융, 투자분석, ESG, 법률, 회계, 컨설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실무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ESG 평가모형, 배당평가모형, 인물 정보 시스템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완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 분석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 및 참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 DERI는 자문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ESG, 법률, 회계, 경영 등 여러 분야의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배구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동위원회를 통해 지침·기준·가이드라인의 제·개정 및 주요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구하며 이와 같은 의견이 DERI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당 연구소의 서비스와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김호준	-	지배구조연구소장	02-769-2032	hojoon.kim@daishin.com
담당자	이선경	ESG본부	본부장	02-769-3108	sunyoung.lee01@daishin.com
	안상희	Proxy본부	본부장	02-769-3020	sanghee.ahn@daishin.com
	황운경	법제도연구팀	팀장	02-769-3090	oonkyong.hwang@daishin.com